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91

발의연월일: 2021. 2. 26.

발 의 자: 박상혁 · 정일영 · 김민석

이수진 • 이소영 • 서영교

이탄희 · 한병도 · 이규민

최인호 • 박용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거나 그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'보건위생물품'이라는 용어 대신 '생리용품'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,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·범위 등"을 "설정·보급 등"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여성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주민등록증, 학생증,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의 범위, 지원 방법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생리용품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・②	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	<u><</u> 삭 제>
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	
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	
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	
<u>있다.</u>	
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	4
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	
의 <u>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</u>	<u>설정·보급 등</u>
물품 지원의 기준·범위 등 <mark></mark> 에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	
정한다.	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여성청소년에 대한 생
	리용품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
	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
	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
	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	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
	하는 사유로 여성청소년이 요

청하는 경우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으려는 여성 청소년은 주민등록증, 학생증,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 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생 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공 공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의 범위, 지원 방법 및 절차, 제2 항에 따른 생리용품의 제공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